

Ⅲ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

1 공시주체 : 모든 지방자치단체장

2 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■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
○ 예산공시 4개 분류 16개 세부항목, 결산공시 9개 분류 59개 세부항목

● 공통공시의 범위

→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(지방재정법 제60조)

- 세입·세출예산의 운용상황(성과계획서, 성과보고서 포함)
- 재무제표
- 채권관리 현황
- 기금운용 현황
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지역통합재정통계
-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정보
- 중기지방재정계획
- 제36조의2 및「지방회계법」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
-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
-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
-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
-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
- 투자심사사업, 지방채 발행사업, 민간자본 유치사업, 보증채무사업의 현황
-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(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 등)

→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(시행령 제68조)

-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-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■ 특수공시 :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
-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●● 특수공시의 대상

→ 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
- 공시대상 건수 대비 2~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

→ 대상사업 선정기준

-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
※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,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

- 주민 관심도 제고,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

-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

(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)

※ 공시건수,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

특수공시사항 예시

-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
-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 관련 주민관심사항
- BIO 산업단지 유치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
- 지역 특수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
-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 현안사업 추진실적 등

3 공시의 시기 및 작성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- 정기공시 : 매년 2월, 8월 총 2회 실시
- 수시공시 :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
- 작성방법 : 공시편람을 준수하되,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세부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

4 공시방법

-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, 편의성, 시청률,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
-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, 지역방송, 시·군정지(반상회보) 등
 -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
 -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·군정지 등 공시수단 추가 활용
 -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,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가 포함된 시·군정지(반상회보)를 비치
 -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, 정책토론회 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활용 등
- 최소한 1년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공시를 유지
 - ※ 차년도 재정공시 이전까지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하며,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재정공시 자료도 최소 1년 이상 보관
 - ※ 1년이 경과한 재정공시 자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시 자료로서 관리

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

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

- △△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·보급
- △△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

■ 정치적 공약,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

-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
- △△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
- △△정부정책에 원천적으로 반대

■ 국가기밀 또는 의사결정·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

-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

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

-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